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12호 2022. 12. 22.(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278호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2-281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29
- 사천시 고시 제2022-282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
(부진입도로)(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53
- 사천시 고시 제2022-283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8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710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6
- 사천시 공고 제2022-171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96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78호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5-105호(2015.07.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18-32호(2018.02.14.), 사천시 고시 제2019-210호(2019.09.11.), 사천시 고시 제2020-365호(2020.11.12.), 사천시 고시 제2020-429호(2020.12.24.)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합니다.

2022. 12. 22.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부 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술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 나. 면 적 : 247,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기정) 2015. 07. 30. ~ 2022. 12. 31.

(변경) 2015. 07. 30. ~ 2024. 12. 31.

※ 연장사유 : 원활한 사업 진행과 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태양력 발전업(D35114) : 건축물 지붕 및 주차장 등에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수탁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위탁자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37, 미라벨오피스텔 101호

나. 사업시행자

- 수탁자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이사 조 혁 중

위탁자 : 대진산업단지(주)외 3개사 대표 백 영 춘
[(주)부성, (주)해원, 경민산업(주)]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답	구거	도로	임야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필지수	30	6	1	3	16	2	1	1
면 적(m ²)	247,913	11,598	183	16,233	216,257	1,412	1,847	383
구성비(%)	100.0	4.7	0.1	6.5	87.2	0.6	0.7	0.2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계	산림청	농림축산 식품부	기 획 재정부	사천시	
필지수	30	2	-	1	1	3	25
면적(m ²)	247,913	1,368	-	183	1,185	16,233	230,312
구성비(%)	100.0	0.6	-	0.1	0.5	6.5	92.9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7,913	100.0	
산업시설공간	149,610	60.3	
BL1	27,625	11.1	
BL2	30,345	12.1	
BL3	55,940	22.6	
BL4	35,700	14.4	
지원시설공간	11,770	4.7	
지원시설1	5,050	2.0	
지원시설2	6,720	2.7	
공공시설공간	86,533	35.0	
도로(중1-5호선)	28,693	11.6	도로:12.9%
도로(중2-18호선)	3,250	1.3	(증 0.2%)
주차장⑩	1,960	0.8	주차장:2.1%
주차장⑪	3,085	1.3	(증 0.1%)
배수지⑤	1,120	0.5	
저류지③	2,815	1.1	
오수처리시설⑥	255	0.1	가압장
소공원⑱	9,415	3.8	녹지:18.3%
소공원⑳	780	0.3	
완충녹지㉓	9,390	3.8	
완충녹지㉔	25,770	10.4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중로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국지 도로	949	소로2-34	소로2-9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5	대진리 산70-4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1,960	-	1,96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3,085	-	3,085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대진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9,415	-	9,41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20	대진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780	-	780	"	

4)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 일원	9,390	-	9,39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25,770	-	25,770	"	

5) 상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1,120	-	1,12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 용수량

구분	용수수요량(m ³ /일)	비고
계	114.1	
생활용수	114.1	
공업용수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6) 하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255	-	25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펌프장

◎ 오 · 폐수량

구분	오 · 폐수량(m ³ /일)	비고
계	67.46	
생활오수	67.46	
산업폐수	-	

7) 우수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우수지	저류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2,815	-	2,815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8) 에너지공급계획

◎ 전 력

전력소요예상량(MWh/m ² · 년)	비고
37,604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된 결과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추정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52,084	
용 지 비	소계	7,846	
	토지매입비	5,626	
	지장물보상비	2,220	축사, 주택2채, 묘지(34기) 등
조 성 비	소계	33,338	
	공사비	21,032	부지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제경비	12,306	
자본비용	소계	7,200	
	금융이자	7,200	48개월
기타비용		3,700	각종부담금, 운영 등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총사업비 약 521억원은 산업단지 승인전 용지보상비 및 조사설계비 등이 소요되며, 이후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별로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임
- (기 정)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2년
합계	52,084	14,946	37,138
용지비	7,846	7,846	-
조성비	33,338	2,400	30,938
각종부담금	7,200	3,600	3,600
간접비	3,700	1,100	2,600

- (변 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4년
합 계	52,084	14,946	37,138
용지비	7,846	7,846	-
조성비	33,338	2,400	30,938
각종부담금	7,200	3,600	3,600
간접비	3,700	1,100	2,600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다.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약 521억원 중 교보자산신탁(주) 170억원, 시공사 책임준공(약 351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구 분	합 계(백만원)	비고
합 계	52,084	
금융기관[교보자산신탁(주)]	17,000	용지비, 각종부담금 등
시공사[(에스케이건설(주))]	35,084	조성비 및 간접비(책임준공)

라. 분양계획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전체 사업부지면적은 247,913㎡로 이중 149,610㎡(60.3%)의 산업시설용지를 대진산업단지(주)외 3개사에서 100% 실사용할 계획으로 별도의 분양계획은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붙임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업종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49,610	-	149,610	100.0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55,940	-	55,940	37.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625	-	27,625	18.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6,045	-	66,045	44.1

※ 공통업종 : 태양력 발전업(D35114) - 건축물 지붕 및 주차장 등에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함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토 지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7,913	100.0	-
산업시설공간	149,610	60.3	사업시행자에 귀속
지원시설공간	11,770	4.7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5,045	2.1	
주차장	5,045	2.1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81,488	32.9	
도로	31,943	12.9	사천시에 귀속
배수지	1,120	0.5	사천시에 귀속
저류지	2,815	1.1	사천시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255	0.1	사천시에 귀속
공원	10,915	4.1	사천시에 귀속
완충녹지	35,160	14.2	사천시에 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시설물

구 분		규격	수량	단위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1-5	B=20.0	949	m	사천시 귀속		
	중로2-18	B=15.0	199	m	"		
우수	L형측구	B=500	3,145	m	"		
	우수관	D300~D1,200	2,537.5	m	"		
	우수받이	400×500×750	150	개소	"		
	집수정	700×700×1,000	24	개소	"		
	U형수로	400C		1,277	m	"	
		600C		522	m	"	
		800B		405	m	"	
	우수맨홀	1호		10	개소	"	
		2호		17	개소	"	
	저류지		1	개소	"		
	비점오염저감시설		2	개소	"		
오수	오수관	D250~D300	675	m	"		
	오수관(압송관)	D150	696	m	"		
	오수받이	410×510×940	5	개소	"		
	오수맨홀	1호	17	개소	"		
상수	상수도관	D30~D75	2,173	m	"	부지의 포함	
	제수변	D80	6	기	"		
	지상식소화전	D100	2	개소	"		
	가압장		1	개소	"		
	배수지		1	식	"		
구조물	전석쌓기	H=0.6~4.0m	0	m	"		
	조립식PC압거	1.5×1.5	66	m	"		
	조립식PC압거	2.0×1.5	72	m	"		
	L형옹벽	H=1.0~6.0m	797.5	m	"		
	식생보강토옹벽	H=0.5~4.5m	285.3	m	"		
포장	아스콘포장	T=50cm	18,030	m ²	"		
	보도블럭	T=6cm	4,215	m ²	"		
	잔디블럭	996×996×150	3,602	m ²	"		
	도로경계석	150×150×1,000	3,648.5	m	"		
가로수	이팝나무	H3.5×R12	241	주	"		
공원	소공원	-	2	개소	"		
교통 안전 시설	방법CCTV	-	2	개소	"		
	교통표지판	주의,규제	27	EA	"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공	507	m ²	"		
	차선도색	실선,과선	812	m ²	"		
	도로표지병		433	EA	"		
	도로반사경	D1,000	5	EA	"		
전기	가로등	H=8m	54	본	"		
	교통신호기	점멸등	1.0	개소	"		
	횡단보도유도등	횡단보도	5.0	개소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7,913	-	247,913	100.0	
일반공업지역	247,913	-	247,913	100.0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7,913	-	247,913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① 총괄표

(단위 : 개, m, m²)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중로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국지 도로	949	소로2-34	소로2-90	일 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5	대진리 산70-4	일 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나) 주차장(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1,960	-	1,96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3,085	-	3,085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대진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9,415	-	9,41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20	대진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780	-	780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녹지(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 일원	9,390	-	9,39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25,770	-	25,770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1,120	-	1,12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우수지(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우수지	저류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2,815	-	2,81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 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255	-	25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펌프 장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계		247,913	-	-	247,913	
-	I	191,805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149,610	산업시설용지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번지 일원	1,960	주차장10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번지 일원	9,415	소공원19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25,770	완충녹지24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5,050	지원시설용지1
-	II	24,165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번지 일원	3,085	주차장11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255	오수처리시설6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6,720	지원시설용지2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번지 일원	2,815	유수지3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번지 일원	1,120	배수지5
-			6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번지 일원	9,390	완충녹지23
-			7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780	소공원20
-	-	31,943	-	-	31,943	도로 (2개노선)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남측부 5m 녹지대로부터)
I-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소공원1 (변경없음)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9,415.0	-	9,415.0	
기정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0-1	317.8	-	317.8	
기정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70-1	914.0	-	914.0	
기정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0-1	8,183.2	-	8,183.2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9,415.0	-	-	
기정	도로	317.8	-	-	
기정	휴양시설	914.0	-	-	
기정	녹지	8,183.2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위치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9,415	-	-	-		
소 계			317.8	-	-	-		
도로	1-1	보행로1	87.6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1-2	보행로2	80.5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3	보행로3	23.4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4	보행로4	41.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5	보행로5	85.3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소 계			914.0	-	-	-		
휴양 시설	2-1	휴게시설1	600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2-2	휴게시설2	10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2-3	휴게시설3	214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녹지	3	녹지	8,183.2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소공원2 (변경없음)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780.0	-	780.0	
기정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	122.2	-	122.2	
기정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1-8	27.6	-	27.6	
기정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1-2	630.2	-	630.2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780.0	-	-	
기정	도로	122.2	-	-	
기정	휴양시설	27.6	-	-	
기정	녹지	630.2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위치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780.0	-	-	-	-	
도로	소 계		122.2	-	-	-	-	
	1-1	보행로1	122.2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휴양 시설	소 계		657.8	-	-	-	-	
	2-1	휴게시설 1	27.6	곤양면 대진리 1-8	-	-	-	
녹지	3	녹지	630.2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 사천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되는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대진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4. “지정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8.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0.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 번호	규 제 내 용		비 고
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제9조 (담장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대지내 담장은 경관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과형 담장 또는 수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불합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주차장) ①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장 입지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② 산업시설용지 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③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3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 번 호	규 제 내 용		비 고
I-5, II-3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14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한다.

③ 용적률은 300%이하를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6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20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 등에 따른다.

제21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식재) 개별공장 입지시 건물이 전면 또는 도로변으로 5% 이상의 녹지를 설치토록 권장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3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별표 1: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도면표시 방법

규 제 사 항	도면표시 방법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가구·획지번호	I - 1	가구번호 : 로마숫자 획지번호 : 아라비아 숫자				
건축물의 층수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최고층수</td> </tr>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최저층수</td> </tr> </table>		최고층수		최저층수	표시 우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저층수, 우측상단은 최고층수를 표시
	최고층수					
	최저층수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용적률</td>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td> </tr> <tr>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건폐율</td> <td style="width: 40px; height: 20px;"></td> </tr> </table>	용적률		건폐율		표시 좌측하단에 아라비아숫자는 최대 건폐율, 좌측상단은 최대용적률을 표시
용적률						
건폐율						
건축한계선	—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변경없음)

번호	좌 표		번호	좌 표	
	X	Y		X	Y
1	172,673.6130	108,193.7700	60	171,957.7240	108,950.2380
2	172,645.3230	108,191.6250	61	171,957.5480	108,955.2790
3	172,638.6130	108,172.2570	62	171,985.4210	108,961.2880
4	172,638.5360	108,163.1140	63	172,003.1400	108,959.8870
5	172,636.6030	108,161.9580	64	172,017.7470	108,952.6970
6	172,634.2180	108,160.5330	65	172,036.4350	108,938.7560
7	172,625.0660	108,157.2100	66	172,092.0660	108,943.4000
8	172,624.6510	108,158.7140	67	172,108.4240	108,938.1990
9	172,621.1660	108,158.0510	68	172,138.1680	108,923.2640
10	172,611.7491	108,198.3124	69	172,152.7410	108,921.1370
11	172,585.5860	108,228.1690	70	172,151.8320	108,916.8060
12	172,567.3760	108,238.5460	71	172,158.7990	108,919.4090
13	172,559.7840	108,258.3240	72	172,162.3850	108,923.1610
14	172,476.9467	108,335.7783	73	172,166.7630	108,923.7910
15	172,415.5700	108,261.2570	74	172,169.4700	108,924.1810
16	172,376.4920	108,268.2250	75	172,181.2310	108,925.8730
17	172,336.2060	108,291.9750	76	172,181.8660	108,917.1160
18	172,336.0370	108,292.0750	77	172,188.4140	108,904.1000
19	172,320.0670	108,306.2280	78	172,192.1960	108,897.7530
20	172,320.0666	108,306.2283	79	172,197.4450	108,888.9440
21	172,319.8450	108,306.1880	80	172,198.0650	108,889.2560
22	172,312.5200	108,304.8530	81	172,203.5510	108,892.0120
23	172,308.3500	108,321.8990	82	172,206.1360	108,893.2760
24	172,303.1640	108,319.5820	83	172,212.3300	108,894.3370
25	172,297.7610	108,336.4200	84	172,225.2090	108,891.1380
26	172,294.9510	108,336.8510	85	172,246.1560	108,877.6800
27	172,291.9290	108,343.8580	86	172,247.5560	108,888.3290
28	172,293.3740	108,344.8180	87	172,244.6410	108,891.9040
29	172,277.3600	108,367.1130	88	172,245.7890	108,898.9130
30	172,269.6580	108,377.8360	89	172,265.2640	108,895.6300
31	172,270.1040	108,378.9480	90	172,283.8840	108,892.4910
32	172,253.2180	108,397.2960	91	172,303.8800	108,888.4590
33	172,240.9480	108,404.6840	92	172,323.8930	108,884.4710
34	172,222.8860	108,428.8540	93	172,342.0160	108,875.9690
35	172,233.7610	108,435.2510	94	172,359.8570	108,866.7960
36	172,224.8480	108,444.5270	95	172,375.1370	108,855.2460
37	172,221.2390	108,458.7090	96	172,394.2570	108,839.9590
38	172,202.5610	108,474.0690	97	172,411.1060	108,822.1770
39	172,189.7450	108,480.7310	98	172,421.1700	108,809.4750
40	172,185.5080	108,497.5620	99	172,426.2200	108,803.1010
41	172,153.7940	108,531.4770	100	172,440.5380	108,783.8400
42	172,135.1900	108,554.0560	101	172,454.6890	108,764.8700
43	172,105.2260	108,604.3860	102	172,458.8000	108,758.3270
44	172,089.7320	108,618.2950	103	172,460.0340	108,756.3630
45	172,090.7840	108,626.3530	104	172,455.4600	108,751.4610
46	172,084.0520	108,640.0550	105	172,454.0480	108,749.9480
47	172,082.9170	108,654.9500	106	172,441.5870	108,736.5940
48	172,071.7930	108,684.0620	107	172,444.8460	108,731.0800
49	172,058.4840	108,705.4810	108	172,454.2820	108,715.1140
50	172,066.0230	108,739.1150	109	172,536.5050	108,575.9980

51	172,054.2130	108,754.9150	110	172,542.1500	108,553.0940
52	172,056.5990	108,778.5710	111	172,569.3800	108,505.9220
53	172,047.2000	108,795.7320	112	172,562.9760	108,475.5410
54	172,041.1320	108,812.4560	113	172,566.8880	108,467.8460
55	172,028.8670	108,856.0660	114	172,591.5700	108,452.4000
56	172,027.8340	108,876.2640	115	172,632.5190	108,372.2620
57	172,009.4630	108,891.7080	116	172,646.0600	108,331.8840
58	171,986.8500	108,919.4230	117	172,648.4560	108,272.9180
59	171,973.0400	108,939.5960	118	172,671.3130	108,245.2610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공 부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0필지		합계		247,913	247,913	-	-	-	-	-	
1	대진리	1	임	598	598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	대진리	1-11	답	1	1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3	대진리	1-12	답	743	74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4	대진리	1-13	구	183	183	국(농림수산부)	-	-	-	-	
5	대진리	1-4	답	826	82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6	대진리	1-14	답	796	79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7	대진리	1-15	잡	1,847	1,84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8	대진리	1-16	답	650	650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9	대진리	1-8	답	8,582	8,58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0	대진리	4-1	대	1,224	1,22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1	대진리	4-2	창	383	38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2	대진리	4-3	대	188	188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3	대진리	산70-1 7	임	53,925	53,925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4	대진리	산70-2	임	593	59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5	대진리	산70-1 8	도	9,326	9,326	사천시	-	-	-	-	
16	대진리	산70-4	임	50,002	50,00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7	대진리	산70-5	임	1,147	1,14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8	대진리	산70-1 9	도	1,967	1,967	사천시	-	-	-	-	
19	대진리	산70-8	임	44,414	44,41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0	대진리	산71-2	임	10,397	10,39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1	대진리	산71-3	도	4,940	4,940	사천시	-	-	-	-	
22	대진리	산71-4	임	20,266	20,26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3	대진리	산72-5	임	13,534	13,53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4	대진리	산72-2	임	1,185	1,185	국(기획재정부)	-	-	-	-	
25	대진리	산72-6	임	14,506	14,50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6	대진리	산73	임	2,083	2,08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7	대진리	산74	임	1,041	1,041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8	대진리	산74-4	임	1,864	1,86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9	대진리	산75-5	임	600	600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30	대진리	산75-1 2	임	102	10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7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나. 명 칭 :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86,533m²(변경없음)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 1-5호선	L=949m, B=20m, A=28,693m ²	
	중로 2-18호선	L=199m, B=15m, A=3,250m ²	
주 차 장	주차장 1	A=1,960m ²	
	주차장 2	A=3,085m ²	
공 원	소공원 1	A=9,415m ²	
	소공원 2	A=780m ²	
녹 지	완충녹지 1	A=9,390m ²	
	완충녹지 2	A=25,770m ²	
수도공급시설	수도공급시설	A=1,120m ²	
우수지	우수지	A=2,815m ²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A=255m 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5.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5. 7. 30.~ 2022. 12. 31.

└ 변경: 2015. 7. 30.~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2020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 반 도 로	노선번호 (노선명)	시도6호선 (곤양 서정 ~ 곤양 검정)
도로공사의 종류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 (수탁자)교보자산신탁(주) 대표이사 조혁중 (위탁자)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 대표자 백영춘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곤양면 대진리 산70-1번지 ~ 산70-6번지 까지 (0.949km)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기정)2016. 1. 1. ~ 2022. 12. 31. (변경)2016. 1. 1. ~ 2024. 12. 31.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기존 시도6호선(폭8m)의 도로가 이설 됨에 따라 폭원 20m로 연장 949m를 개설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2016. 1. 1. ~ 2022. 12. 31. (변경)2016. 1. 1. ~ 2024. 12. 31.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81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2012.9.1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14-31호(2014.3.27.), 제2014-85호(2014.6.19.), 제2015-76호(2015.6.25.), 제2016-4호(2016.1.14.), 제2016-267호(2016.12.29.), 제2017-126호(2017.7.13.), 제2017-251호(2017.12.21.), 제2018-262호(2018.12.27.), 2019-294호(2019.12.26.)호, 2021-387(2021.12.22.)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한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 나. 면 적 : 102,469㎡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2. 9. 13. ~ 2022. 12. 31.
(변경) 2012. 9. 13. ~ 2024. 6. 30.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대	임	도
필지수	37	14	9	3	4	4	3
면 적(m ²)	102,469	16,672	13,122	2,477	15,264	53,633	1,301
구성비(%)	100.0	16.3	12.8	2.4	14.9	52.3	1.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37	7	6	1	30
면 적(m ²)	102,469	3,992	3,903	89	98,477
구성비(%)	100.0	3.9	3.8	0.1	96.1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02,469	100.0	
산업시설용지	70,890	69.2	
공공시설용지	31,579	30.8	
도 로	12,693	12.4	
주 차 장	1,650	1.6	
유 수 지	1,810	1.8	저류지
공 원	1,560	1.5	소공원
녹 지	13,866	13.5	완충녹지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합계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중로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	-	-
소로	1	37	544	1	37	544	-	-	-	-	-	-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2	20~26	집산 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3)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4)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5)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대 동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6) 상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수요량(m ³ /일)	비 고
합 계	254m ³ /일	계획용수량 254m ³ /일 (축동일반산업단지 배수시설 사용)
공업용수	226m ³ /일	
생활용수	28m ³ /일	

7)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오·폐수량(m ³ /일)	비 고
합 계	45m ³ /일	계획오·폐수량 45m ³ /일 (축동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용)
산업폐수	20m ³ /일	
생활오수	25m ³ /일	

8)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천kw/일)	비 고
계	3.83천kw/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37회선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 정

투자내역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각종 부담금	사무비	합 계
합 계	8,400,694	300,000	1,056,846	5,770,000	500,000	206,007	196,453	16,430,000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2012	-	300,000	-	-	-	-	-	300,000
2013	5,920,000	-	-	-	-	-	-	5,920,000
2014	-	-	300,000	-	400,000	60,000	40,000	800,000
2015	-	-	-	217,000	-	60,000	40,000	317,000
2016	1,250,000	-	-	2,000,000	-	60,000	50,838	3,350,838
2017	-	-	-	553,000	50,000	6,007	25,615	634,622
2018	1,126,362	-	756,846	1,000,000	10,000	10,000	10,000	2,918,208
2019	104,332	-	-	500,000	10,000	10,000	10,000	634,332
2020	-	-	-	1,000,000	20,000	5,000	10,000	1,030,000
2021	-	-	-	-	-	-	5,000	5,000
2022	-	-	-	500,000	10,000	5,000	5,000	520,000

■ 변 경

(단위:천원)

투자내역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각종 부담금	사무비	합 계
합 계	8,400,694	300,000	1,056,846	5,770,000	500,000	206,007	196,453	16,430,000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2012	-	300,000	-	-	-	-	-	300,000
2013	5,920,000	-	-	-	-	-	-	5,920,000
2014	-	-	300,000	-	400,000	60,000	40,000	800,000
2015	-	-	-	217,000	-	60,000	40,000	317,000
2016	1,250,000	-	-	2,000,000	-	60,000	50,838	3,350,838
2017	-	-	-	553,000	50,000	6,007	25,615	634,622
2018	1,126,362	-	756,846	1,000,000	10,000	10,000	10,000	2,918,208
2019	104,332	-	-	500,000	10,000	10,000	10,000	634,332
2020	-	-	-	1,000,000	20,000	5,000	10,000	1,030,000
2021	-	-	-	-	-	-	-	-
2022	-	-	-	-	-	-	-	-
2024.6	-	-	-	500,000	10,000	5,000	10,000	525,000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재원조달계획은 당사 투자자금으로 84억과 금융권 대출자금(PF) 8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단위:천원)

투자내역	자기자본	금융권 대출자금(PF)	합 계
합 계	8,430,000	8,000,000	16,430,000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300,000	-	300,000
2013	5,920,000	-	5,920,000
2014	800,000	-	800,000
2015	317,000	-	317,000
2016	950,838	2,400,000	3,350,838
2017	34,622	600,000	634,622
2018	18,208	2,900,000	2,918,208
2019	34,332	600,000	634,332
2020	30,000	1,000,000	1,030,000
2021	-	-	-
2022	-	-	-
2024.6	25,000	500,000	525,000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붙임1”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70,890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합 계	102,469	100.0	-
산업시설용지	70,890	69.2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16,153	15.8	-
도로(중로1-42)	8,035	7.9	사천시 무상귀속
도로(중로2-53)	4,114	4.0	사천시 무상귀속
도로(소로1-76)	544	0.5	사천시 무상귀속
유수지⑩	1,810	1.8	사업시행자 귀속
주차장③⑩	1,650	1.6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용지	15,426	15.0	-
소공원④⑤	1,560	1.5	사업시행자 귀속
완충녹지⑤③	2,100	2.0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⑤④	890	0.9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⑤⑤	2,270	2.2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⑤⑥	6,267	6.1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⑤⑦	2,339	2.3	사천시 무상귀속

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귀속 하지 않음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시설물(변경없음)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 (각종포장포함)	중로1-42	B=20~26m	L=347m	무상귀속	
		가로수(이팝나무)	69주		
		교통표지판(각종)	12개소		
		투광기(H=8.0m)	4개소		
	중로2-53	B=15m	L=247m	무상귀속	
		가로수(이팝나무)	51주		
		교통표지판(각종)	8개소		
소로1-76	B=10m	L=37m	무상귀속		
우 수	L형 측구	B=0.5m	L=1,236m	무상귀속	
			L=203m	사업시행자 귀속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800B	L=79.0m	무상귀속	
	우 수 관	∅300~1350mm	L=1,119.6m	무상귀속	
	집 수 정		0.7*0.7*1.0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0.9*0.9*1.5	3.0개소	무상귀속
			1.5*1.5*1.6	2.0개소	무상귀속
			1.5*1.5*1.6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1.5*1.5*2.0	1.0개소	무상귀속
	우수받이	0.3*0.4	59.0개소	무상귀속	
	우수맨홀		사각특2호	15.0개소	무상귀속
			사각특4호	5.0개소	무상귀속
	도수로	0.5*0.35	L=25.0m	무상귀속	
			L=42.0m	사업시행자 귀속	
	BOX	1.2*1.0	8.5m	사업시행자 귀속	
	U형개거		1.2*1.0	L=4.5m	사업시행자 귀속
			1.5*1.0	L=37.1m	무상귀속
오 수	오 수 관	∅75~250mm	L=460.0m	무상귀속	
	오수맨홀	원형1호	6.0개소	무상귀속	
	가압맨홀	2.0x2.0x3.5	1개소	무상귀속	
상 수	상수관로	∅80mm	L=489.0m	무상귀속	
		∅50~75mm	L=18.0m	무상귀속	
	소화전	지상식	1.0개소	무상귀속	
구 조 물	전석	H=0.5~3.5m	414.5m	무상귀속	
전 기	가로등	H=10.0m	14.0개소	무상귀속	
저 류 지	저류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공 원	공원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공간	수 목	스트로브잣나무	1,419.0주	무상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2,469	-	102,469	100.0	-
일반공업지역	102,469	-	102,469	100.0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102,469	-	102,46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합계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중로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	-	-
소로	1	37	544	1	37	544	-	-	-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2	20 ~26	집산 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다)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마)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대 동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I-1	I	70,890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산업시설용지
I-2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산업시설용지
II-1	II	16,153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도 로
II-2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주차장 ^㉔
II-3			축동면 사다리 131번지 일원		유수지 ^㉕
III-1	III	15,426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소공원 ^㉖
III-2			축동면 사다리 133-1번지 일원		완충녹지 ^㉗
III-3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완충녹지 ^㉘
III-4			축동면 사다리 120번지 일원		완충녹지 ^㉙
III-5			축동면 사다리 113-16번지 일원		완충녹지 ^㉚
III-6			축동면 사다리 118-1번지 일원		완충녹지 ^㉛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I-1 I-2	사다리 산43-28번지	용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에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2-53호선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중로2-53호선과 중로2-50호선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구성)

- 본 지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 제3장 기타사항,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산업시설용 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7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50	-
건폐율	최저층수	70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적용한다.

제8조(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제9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주차단위구획시 법정 주차대수의 5% 이상은 대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할 것을 권장함

제11조(장애인을 위한 계획)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2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사천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다.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2)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	보행자도로	사다리 산43-28번지	250	-	-	-	
기정	2	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1,310	-	-	-	
소 계				1,560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79908.8580	116650.5500	34	180172.6380	116860.4770
2	179910.6730	116655.7690	35	180175.8480	116857.5590
3	179915.5750	116669.8710	36	180202.0340	116850.2630
4	179918.7680	116676.5220	37	180218.2540	116841.0480
5	179921.6630	116682.5530	38	180222.6010	116839.6800
6	179923.3080	116688.5740	39	180228.5290	116831.6100
7	179928.0690	116698.8100	40	180223.1020	116813.1820
8	179930.9330	116704.9690	41	180219.9720	116807.7620
9	179944.7900	116721.0510	42	180251.2140	116781.0130
10	179953.9490	116736.9290	43	180260.7370	116774.5090
11	179956.0520	116740.2180	44	180277.3030	116751.6450
12	179982.6840	116770.9170	45	180281.3810	116741.2820
13	179999.1870	116806.2870	46	180283.5570	116737.3060
14	180009.0750	116823.6820	47	180283.3240	116724.4580
15	180022.1360	116849.1580	48	180292.5260	116719.0990
16	180027.3710	116859.3690	49	180281.7710	116692.3420
17	180038.3040	116873.6770	50	180281.6910	116681.8050
18	180039.5830	116875.3510	51	180103.6357	116455.3376
19	180039.8940	116877.2370	52	180011.9490	116531.8850
20	180042.9470	116877.4870	53	179946.8260	116586.2540
21	180045.5040	116881.8350	54	179946.3530	116586.6490
22	180054.1220	116888.1420	55	179936.3890	116595.0680
23	180066.2710	116898.6070	56	179932.0360	116597.9450
24	180082.0590	116913.4170	57	179927.8910	116599.8430
25	180088.5730	116916.3800	58	179927.8310	116600.9040
26	180093.2050	116906.6320	59	179926.9260	116600.2850
27	180111.1520	116902.2930	60	179914.3390	116607.0810
28	180118.9230	116904.6730	61	179913.6156	116622.9939
29	180131.5090	118899.3340			
30	180135.0790	116897.4480			
31	180144.7620	116888.4710			
32	180145.8810	116884.5780			
33	180157.2340	116874.4820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단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는 그 세목(변경)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목적	
합계				102.469	102.469						
1	축동면사다리	산26-26	임	14	1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2	축동면사다리	산26-27	임	102	1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3	축동면사다리	산26-28	구	655	655	국토교통부					
4	축동면사다리	산26-30	도	714	71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5	축동면사다리	산43-28	임	53.309	53.309	양장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6	축동면사다리	산43-30	임	208	20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7	축동면사다리	산43-31	구	1,733	1,733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8	축동면사다리	115-7	답	214	21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9	축동면사다리	116-1	답	705	705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0	축동면사다리	116-2	답	1,061	1,061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1	축동면사다리	117	답	218	21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2	축동면사다리	118-1	답	3,036	3,036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3	축동면사다리	118-4	도	83	83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4	축동면사다리	120-1	도	504	50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5	축동면사다리	120	대	5,178	5,178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16	축동면사다리	121-1	대	3,792	3,792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권주지점)	지상권설정	

□ 토지조서(계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목적	
17	축동면사다리	123-1	대	110	11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8	축동면사다리	124	전	502	5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9	축동면사다리	131	답	1,977	1,977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흠한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0	축동면사다리	132	전	998	998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흠한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1	축동면사다리	133-1	답	2,506	2,506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2	축동면사다리	133-2	답	2,820	2,82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3	축동면사다리	133-3	전	628	628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4	축동면사다리	133-4	전	592	592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5	축동면사다리	133-5	전	473	473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6	축동면사다리	133-6	전	820	82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7	축동면사다리	133-7	전	393	393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8	축동면사다리	133-8	전	387	387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흠한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9	축동면사다리	133-9	전	929	929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0	축동면사다리	133-10	전	727	727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흠한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1	축동면사다리	133-11	전	750	75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 토지조서(계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목적	
32	축동면사다리	133-16	전	1,025	1,025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출판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3	축동면사다리	134	답	585	585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4	축동면사다리	135-4	전	5,260	5,260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5	축동면사다리	135-5	전	3,188	3,18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6	축동면사다리	207-1	대	6,184	6,184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7	축동면사다리	1046	구	89	89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 건축물조서 : 해당사항 없음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우수지)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도 로	중로1 - 42호선	• L=347m, B=20~26m
	중로2 - 53호선	• L=247m, B=15m
	소로1- 76호선	• L=37m, B=10m
주 차 장	노외주차장 30	• A=1,650㎡
공 원	소공원 45	• A=1,560㎡
녹 지	완충녹지 53	• A=2,100㎡
	완충녹지 54	• A=890㎡
	완충녹지 55	• A=2,270㎡
	완충녹지 56	• A=6,267㎡
	완충녹지 57	• A=2,339㎡
유 수 지	우수지 10	• A=1,81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성 명 :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 나. 주 소 : 진주시 상대동 33-12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 당 초 : 2012. 09. 13. ~ 2022. 12. 31.
 - └ 변 경 : 2012. 09. 13.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82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2012.09.13.)로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1-374호(2021.12.16.)로 최종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에 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 면 적 : 248,498㎡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 2012. 09. 13. ~ 2022. 12. 31.

변경 - 2012. 09. 13. ~ 2024. 06. 30.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C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답	대	도	전	구	입	비고
면 적(㎡)	248,498	5,127	7,765	293	89,937	4,399	140,977	
구성비(%)	100.0	2.1	3.1	0.1	36.2	1.8	56.7	
필지수(필지)	48	2	2	1	18	9	16	

나. 소유자별 현황 (변경)

구 분	합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계	국 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 획 재정부	
면 적 (㎡)	당초	248,498	243,806	-	4,692	293	-	4,399
	변경	248,498	248,498	-	-	-	-	-
구성비 (%)	당초	100.0	98.1	-	1.9	0.1	-	1.8
	변경	100.0	100.0	-	-	-	-	-
필지수 (필지)	당초	48	38	-	10	1	-	9
	변경	48	48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8,498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BL1	58,825	23.7	
BL2	74,848	30.1	
BL3	10,495	4.2	
BL4	13,838	5.6	
지원시설용지	4,205	1.7	
공공시설용지	86,287	34.7	
도로	34,479	13.9	
배수지	1,824	0.7	
저류지	5,850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주차장1	2,070	0.8	
주차장2	1,000	0.4	
공원	3,943	1.6	
완충녹지	35,571	14.3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2,557 ' (2,066)	38,754 ' (34,479)	2	1,107 ' (616)	17,671 ' (13,396)	4	1,330 ' (1,330)	20,352 ' (20,352)	1	120 ' (120)	731 ' (731)
중로	기정	5	2,384 ' (1,893)	37,791 ' (33,516)	2	1,107 ' (616)	17,671 ' (13,396)	3	1,277 ' (1,277)	20,120 ' (20,120)	-	-	-
소로	기정	2	173 ' (173)	963 ' (963)	-	-	-	1	53 ' (53)	232 ' (232)	1	120 ' (120)	731 ' (731)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¹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¹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¹ (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¹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¹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¹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¹ (53)	중로2-51	산업단지경 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¹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5,571	-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63	-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2,087	계획용수량 : 2,087㎡/일 배수지 용량 V=1,200㎡ (체류시간12시간)
축동일반산업단지	663	
대동일반산업단지	254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790	
탑리지역	380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량

구분	오폐수량(㎡/일)	비고
합계	197.8	계획오·폐수량 : 197.8㎡/일
산업폐수	114.5	
생활오수	83.3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 사업비 59,047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00백만원, 타인
자본인 금융권대출 34,236백만원, 투자금 11,200백만원, 분양수익금
으로 13,311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투자내역	투자액(천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용지비 및 보상비	-	-
		기타비	-	-
		소계	-	-
2015년	2015년	용지비 및 보상비	3,000,000	3,000,000
		공사비	1,155,000	1,155,000
		기타비용	300,000	300,000
		계	4,455,000	4,455,000
2016년	2016년	용지비 및 보상비	1,300,000	1,300,000
		공사비	4,169,000	4,169,000
		기타비용	500,000	500,000
		계	5,969,000	5,969,000
2017년	2017년	용지비 및 보상비	2,800,000	2,800,000
		공사비	-	-
		기타비용	200,000	200,000
		계	3,000,000	3,000,000
2018년	2018년	용지비 및 보상비	9,200,000	9,200,000
		공사비	-	-
		기타비용	1,700,000	1,700,000
		계	10,900,000	10,900,000
2019년	2019년	용지비 및 보상비	2,120,000	2,120,000
		공사비	600,000	600,000
		기타비용	1,300,000	1,300,000
		계	4,020,000	4,020,000
2020년	2020년	용지비 및 보상비	651,000	651,000
		공사비	-	-
		기타비용	1,063,000	1,063,000
		계	1,714,000	1,714,000
2021년~ 2022년	2021년~ 2024년	용지비 및 보상비	2,553,200	2,553,200
		공사비	20,216,000	20,216,000
		기타비용	6,219,800	6,219,800
		계	28,989,000	28,989,000
합 계			59,047,000	59,047,000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계	-	158,006	100.0
제 조 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36,128	2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13,838	8.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10,495	6.6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58,299	36.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39,246	24.9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개발되는 토지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총 면 적	248,498	100.0	-
무상귀속면적	81,667	32.9	-
도로	34,479	13.9	사천시무상귀속
배수지	1,824	0.7	사천시무상귀속
저류지	5,850	2.4	사천시무상귀속
공원	3,943	1.6	사천시무상귀속
완충녹지	35,571	14.3	사천시무상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사업시행자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사업자귀속면적	166,831	67.1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지원시설용지	4,205	1.7	
주차장	3,070	1.2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48,498	-	248,498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8,498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BL1	58,825	23.7	
BL2	74,848	30.1	
BL3	10,495	4.2	
BL4	13,838	5.6	
지원시설용지	4,205	1.7	
공공시설용지	86,287	34.7	
도로	34,479	13.9	
배수지	1,824	0.7	
저류지	5,850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주차장1	2,070	0.8	
주차장2	1,000	0.4	
공원	3,943	1.6	
완충녹지	35,571	14.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변경	7	2,557 '(2,066)'	38,754 '(34,479)'	2	1,107 '(616)'	17,671 '(13,396)'	4	1,330 '(1,330)'	20,352 '(20,352)'	1	120 '(120)'	731 '(731)'
중로	변경	5	2,384 '(1,893)'	37,791 '(33,516)'	2	1,107 '(616)'	17,671 '(13,396)'	3	1,277 '(1,277)'	20,120 '(20,120)'	-	-	-
소로	변경	2	173 '(173)'	963 '(963)'	-	-	-	1	53 '(53)'	232 '(232)'	1	120 '(120)'	731 '(731)'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5,571	-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63	-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I -1	12,294	I -1	1,000	주차장㉓
-	I -2		I -2	2,070	주차장㉓
-	I -3		I -3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⑥
-	I -4		I -4	5,850	저류시설⑨
-	I -5		I -5	1,824	배수시설⑧
-	II -BL1	158,006	II -BL1	58,825	분양 후 획지 분할
-	II -BL2		II -BL2	74,848	분양 후 획지 분할
-	II -BL3		II -BL3	10,495	분양 후 획지 분할
-	II -BL4		II -BL4	13,838	분양 후 획지 분할
-	III	4,205	III	4,205	분양 후 획지 분할
-	IV -1-1	39,464	IV -1-1	15,523	완충녹지④⑥
-	IV -1-2		IV -1-2	4,963	완충녹지④⑨
-	IV -1-3		IV -1-3	15,158	완충녹지⑤②
-	IV -2-1		IV -2-1	2,253	공원④④
-	IV -2-2		IV -2-2	1,690	공원⑦①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1 II-BL1-2 II-BL1-3 II-BL1-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1-5 II-BL2-1 II-BL2-2 II-BL2-11 II-BL2-1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2-3 II-BL2-4 II-BL2-5 II-BL2-6 II-BL2-7 II-BL2-8 II-BL2-9 II-BL2-10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3-1 II-BL3-2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4-1 II-BL4-2 II-BL4-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소공원④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기 정	보 행 로		308	-	308	
기 정	운동시설		66	-	66	
기 정	휴양시설		58	-	58	
기 정	녹 지		1,821	-	1,821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253	66	66	
기 정	보 행 로	308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66	66	6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58	-	-	
기 정	녹 지	1,821	-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²)	위 치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2,253	사다리 산27-1번지	66	66	1	
보 행 로	1	308		-	-	-	
운동시설	2	66		66	66	1	1동
휴양시설	3	58		-	-	-	
녹 지	4	1,821		-	-	-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소공원㉔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기 정	보 행 로		189	-	189	
기 정	운동시설		106	-	106	
기 정	휴양시설		36	-	36	
기 정	녹 지		1,359	-	1,359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시설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90	106	106	
기 정	보 행 로	189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106	106	10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36	-	-	
기 정	녹 지	1,359	-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위 치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690	사다리 217-1번지	106	106	1	
보 행 로	1	189		-	-	-	
운동시설	2	106		106	106	1	1동
휴양시설	3	36		-	-	-	
녹 지	4	1,359		-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전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

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최고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최저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 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7. “주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보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강조색” 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비 고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 ,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114(태양에너지발전업-지붕및주차장에한함),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제조업 -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및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제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산업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2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제1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

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 지원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cm이내, 세로 200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전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 (녹지공간 식재계획) ① 완충녹지 및 공원내 산책로 주변으로 계절별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배수지, 저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86,287m²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42호선	9,056	B=20~26.25m, L=392m
	중로1-43호선	4,340	B=20m, L=224m
	중로2-50호선	8,024	B=16~19.25m, L=501m
	중로2-51호선	6,741	B=15m, L=444m
	중로2-52호선	5,355	B=15~18.25m, L=332m
	소로3-157호선	731	B=6m, L=120m
	소로2-257호선	232	B=8m, L=53m
주차장	28	1,000	
	29	2,070	
완충녹지	46	15,450	
	49	4,963	
	52	15,158	
공 원	44	2,253	
	가	1,690	
배수지(수도공급설비)		1,824	
저류시설(유수지)		5,850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합 계		86,28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 2)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2. 12. 31.
 └ 변경: 2024. 0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소로2-258호선	당초 : L=84m, B=8m, A=1,34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 2)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2. 12. 31.
└ 변경: 2024. 0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83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71호(2021.04.01.)로 최초 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2-134호(2022.06.23.)로 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주진입도로) 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및 대동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와의 연계를 위한 진입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 규 모 : 8,142㎡
 - 중로1-56호선 (L=217m, B=20m, A=5,262㎡)
 - 소로1-2호선 (일부구간 L=150m, B=10~20m A=2,88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당초 - 2020. ~ 2022. 12. 31.
변경 - 2020. ~ 2024. 06. 30.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분	계	답	임	도	구	창
필지수	41	11	3	21	3	3
면적(㎡)	8,142	2,978	505	2,369	574	1,716
구성비(%)	100.0	36.6	6.2	29.1	7.0	21.1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기획 재정부	사천시	
필지수	41	26	15	2	1	8	15
면적(㎡)	8,142	3,221	1,908	565	116	632	4,921
구성비(%)	100.0	39.5	23.4	6.9	1.4	7.8	60.5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142	100.0	-
중로1-56호선	5,262	64.7	L=217m, B=20m
소로1-2호선(일부구간)	2,880	35.3	일부구간 L=150m, B=10~20m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17 (217)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2021.01.14. (사천2021-22)	
기정	소로	1	2	10~30.5 (10~20)	집산도로	10,956 (150)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 ()는 산업단지의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3,000,000천원은 주식회사 장원에서 조달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량 (㎡)	사업비	사업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2024년
당초	8,142㎡	3,434,000	2,000,000	1,434,000	-
변경	8,142㎡	3,434,000	600,000	-	2,400,0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붙임)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사천시 귀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사천시귀속면적	8,142	100.0	-
중로1-56호선	5,262	64.7	사천시귀속
소로1-2호선(일부구간)	2,880	35.3	사천시귀속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17 (217)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2021.01.14. (사천2021-22)	
기정	소로	1	2	10~30.5 (10~20)	집산도로	10,956 (150)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 ()는 산업단지의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1-56호 선	L=217m, B=20m, A=5,262㎡	
	소로1-2호선	L=150m, B=10~20m, A=2,88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사천시장
-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2. 12. 31.
 └ 변경: 2024.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10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 범위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고 신설되는 장학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금 기준 변경(안 별표 1)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입학생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자격기준: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 지급기준:
 - 수시·정시 입학생은 고교내신 및 입학성적 1위에게 100만원 지급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 입학생은 고교 내신 평균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명에게 100만원 지급

나. 꿈 드림 장학생 기준 신설(안 별표 1)

- 관내 고교출신 학생으로서 주소 기준을 충족한 전문대 이상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로서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선정기준(성적+소득) 충족자 40명에게 각100만원 지급

다. 장학금의 지원사업에서 생활장학금 추가(안 제2조)

라. 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개정(안 제4조)

마. 사업비의 지급 제외 조항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6, 팩스번호: 055-831-606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 범위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고 신설되는 장학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금 기준 변경(안 별표 1)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입학생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장학생
- 자격기준: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 지급기준: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 수시·정시입학생은 고교내신 및 입학성적 1위에게 100만원 지급
→ r 입학생은 고교 내신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나. 꿈 드림 장학생 기준 신설(안 별표 1)

- 관내 고교출신 학생으로서 주소 기준을 충족한 전문대 이상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로서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선정기준(성적+소득) 충족자 40명에게 각100만원 지급

다. 장학금의 지원사업에서 생활장학금 추가(안 제2조)

라. 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개정(안 제4조)

마. 사업비의 지급 제외 조항 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2 . ~ 2023. 1.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군에 따른 중학생 및 꿈 드림 장학생은 예외로 하며, 꿈 드림 장학생 보호자의 주소지는 사천시이어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업의 종류)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장학금의 지원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신 설></p> <p>2. ~ 4. (생 략)</p> <p>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장학금 및 우수교사 수혜대상자의 자격은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② (생 략)</p> <p>③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u>제외한다.</u></p> <p>④·⑤ (생 략)</p>	<p>제2조(사업의 종류) ----- ----- -----.</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생활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 ----- -----.</p> <p style="padding-left: 20px;"><u>다만, 학군에 따른 중학생 및 꿈드림 장학생은 예외로 하며, 꿈드림 장학생 보호자의 주소지는 사천시이어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 style="padding-left: 20px;">----- <u>제외할 수 있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별표 1]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관 내 고 교 입 학 생	<p>■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단,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간주함.</p> <table border="1" data-bbox="359 504 1326 611"> <tr> <td>5% 이내</td> <td>5% 초과 ~ 10% 이내</td> </tr> <tr>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able> <p>■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단,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의하여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p> <p>■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p> <p>■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p>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한국폴리텍대 항공캠퍼스 장 학 생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관 외 대 학(교) 입 학 생	<p>■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p> <table border="1" data-bbox="359 1368 1326 1498"> <tr> <td>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td> <td>2개 평가영역 이 1등급인 경우</td> <td>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td> </tr> <tr> <td>200만원</td> <td>100만원</td> <td>5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 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 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예술,체육 기타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p>■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과 단체</p> <table border="1" data-bbox="359 1740 1353 1861"> <thead> <tr> <th colspan="3">개인 종목</th> <th colspan="3">단체 종목</th> </tr> <tr> <th>1위</th> <th>2위</th> <th>3위</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r> </thead> <tbody> <tr> <td>50만원</td> <td>30만원</td> <td>2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단체가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p>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p>성적 향상 학생</p>	<p>▣ 해당 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성적 10% 이상 향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395 349 1031 445"> <tr> <td>20%이상</td> <td>10%이상~20%미만</td> </tr> <tr> <td>50만원</td> <td>20만원</td> </tr> </table> <p>▶ 전 과목(또는 국·영·수) 평균 또는 석차 비교 ▶ 학년 또는 학기 비교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p>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p>꿈 드림 장 학생</p>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로서</p> <p>▶ 신입생은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 영역 이상인 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p> <p>▶ 재학생은 직전 2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내의 학교에 한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399 1225 1355 1391"> <thead> <tr> <th>구분</th> <th>선정기준</th> <th>선정인원</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신입생</td> <td rowspan="2">성적+소득</td> <td>10명</td> <td>100만원</td> </tr> <tr> <td>재학생</td> <td>30명</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타 지급 유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p> <p>▶ 선발인원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복학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선발공고 시 별도 명시함</p>	구분	선정기준	선정인원	지급액	신입생	성적+소득	10명	100만원	재학생	30명	100만원	
구분	선정기준	선정인원	지급액										
신입생	성적+소득	10명	100만원										
재학생		30명	100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71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1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2)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1,005명 → 1,008명(증 3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984명(변동없음)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 24명(증 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1) 총계: 1,005명 → 1,008명(증 3명)
- 2) 일반직 계: 974명 → 977명(증 3명)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소계: 915명 → 918명(증 3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2. ~ 2023. 1. 2.(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3명(안 제2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 증가 인원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2)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인건비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소계(a)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세입	지방세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의존재원		-	-	-	-	-	-
	소계(b)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 호봉인상률 최근 3년간 평균 1.7% 적용

다. 부대의견: 2023년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름

행정과장 백원희(인)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지방세	137,587	139,926	142,305	144,724	147,184	711,72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3명: 자체수입(지방세)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행 정 과 장 백 원 희 (인)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5명”을 “1,00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005</u>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1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008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24명</u></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08							
정무직 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계	977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소계	918							
전문경력관 소계	-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제출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1,005명 → 1,008명(증 3명)

2) 7급: 284명(증 3명)

- 행정: 80명 → 83명(증 3)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예산조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22. ~ 2023. 1. 2.(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천시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1,008	527(3)	24	147	57(1)	27	125	10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77	525(3)	24	118	57(1)	27	125	10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8	6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6급	소계	254	162	3	26	13	6	30	14	
	행정	52	48	2		2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2			2					
	환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13	8			1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1	12			1	1	3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2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1	30	1						
	행정+위생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행정+세무+사회복지	3					1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행정+농업+녹지	6	3					3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공업+시설+환경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284	160	14	39	16	6	28	21	
	행정	83	48	12		5	1	12	5	
	세무	6	5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사회복지	19	3				1	9	6	
7급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수의	2			2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보건진료	7			7					
	환경	2	2							
	시설	22	19			2	1			
	방재안전	1	1							
	운전	3		1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11	7				2		2	
	행정+농업	6	1		2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4	22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농업+녹지	1			1					
	시설+방재안전	2	2							
7급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농업+수의+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39	118	3	35	9	10	31	33	
	행정	55	26			1	5	9	14	
	세무	2	2							
	사회복지	10	4				2	2	2	
	속기	1		1						
	공업	2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보건	1			1					
	의료기술	2			2					
8급	간호	20			6		1	7	6	
	보건진료	4			4					
	시설	18	14			1		3		
	운전	4	3	1						
	전기운영	2	2							
	행정+세무	11	6					2	3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17	11			1	1	1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5	1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9	16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농업+녹지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녹지	6	2				1	2	1	
8급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41	54(3)	1	10	16(1)	4	29	27	
	행정	33	8(3)			3(1)	1	11	10	
	세무	3	3							
	사회복지	12	3				1	1	7	
	사서	5				5				
	속기	1		1						
	방호	2					1	1		
	공업	1				1				
	농업	1			1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10	7			2		1		
	운전	4	1		1	2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1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5	8					10	7	
	행정+농업	7			2		1	1	3	
9급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5	5							
	행정+방재안전	2	2							
	공업+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1			3				
	행정+공업+시설	5	5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 상당	비서	-	-							

관 련 법 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